「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1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6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2. 6. 21(목)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)

○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(2011.12.2공포)에 따라 한·미 FTA 발효일(2012.03.15)에 맞추어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하고자 함.

○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함(안 제24조 제1호의 표)

- 1000cc이하 1cc당 80원
- 1600cc이하 1cc당 140원
- 1600cc초과 1cc당 200원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○ 본 조례안은 2011. 2. 2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축소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임.

○ 본 조례안은 한·미 FTA 발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